

「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」 일부개정 고시안

1. 개정이유

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“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”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27호)의 시험 운영 기간 연장과 법제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운영(한국산업인력공단) 기간 연장

나. 법제처 권고 사항 반영

- * 약칭 사용 수정(목적조항 약칭(‘시행령’) 삭제 및 이하 약칭 수정(‘시행령’→‘영’),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9항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 정비(‘위탁’, ‘수탁’ → ‘운영’ 수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 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검정시험의 운영) 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

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운영기관의 명칭 : 한국산업인력공단
2. 운영기관의 주소 :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
3. 운영기관의 업무
 - 가.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
 - 나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 - 다. 시험 출제, 시험 시행, 채점
 - 라. 합격자 결정 및 발표
 - 마.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,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
 - 바.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4. 운영기간 : 2024. 5. 1. ~ 2027. 4. 30.(3년)

제3조(응시 수수료) ① 영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

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: 45,000원

2.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: 25,000원

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: 100% 환불
2.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: 60% 환불
3.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: 50% 환불

제4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)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(응시 수수료)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(문체부고시 제2018-17호)」는 폐지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<u>국어기본법 시행령</u>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운영의 위탁)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수탁기관의 명칭</u> : 한국산업인력공단 2. <u>수탁기관의 주소</u> :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3. <u>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나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. 시험 출제, 시험 시행, 채점 라.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마.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,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바.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. <u>위탁기간</u> : 2021. 5. 1. ~ 2024. 4. 30.(3년) <p>제3조(응시 수수료) ① <u>시행령</u>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: 45,000원 2.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: 25,000원 <p>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: 100% 환불 2.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: 60% 환불 3.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: 50% 환불 <p>제4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<u>국어기본법 시행령</u>」 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검정시험의 운영) 「<u>국어기본법 시행령</u>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운영기관의 명칭</u> : 한국산업인력공단 2. <u>운영기관의 주소</u> :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3. <u>운영기관의 업무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나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. 시험 출제, 시험 시행, 채점 라.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마.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,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바.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. <u>운영기간</u> : 2024. 5. 1. ~ 2027. 4. 30.(3년) <p>제3조(응시 수수료) ① <u>령</u>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: 45,000원 2.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: 25,000원 <p>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: 100% 환불 2.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: 60% 환불 3.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: 50% 환불 <p>제4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